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69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배경렬

변론 종결2024. 8. 22.

판결 선고2024.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3.부터 202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7,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3. 22.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원고의 C은행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화 안내에 따라 자신의 C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2022. 3. 22. 45,000,000원, 2022. 3. 23. 42,000,000원 합계 87,000,000원(= 45,000,000원 + 4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이후 가.항 기재 전화가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행위의 일환임이 드러났고, 원고는 2022. 6. 28.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있던 돈 중 25,140,000원을 피해환급금 명목으로 반환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나.항 기재 87,000,000원 중 4,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23. 8. 17.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가소9553 판결),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39275호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한 87,000,000원 중 피해환급금 명목으로 반환받은 25,140,000원과 관련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4,000,000원을 공제하면 57,860,000원(= 87,000,000원 - 25,140,000원 - 4,000,000원)이 남는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57,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7,8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389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4, 11호증, 이 법원의 E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원고의 이체금액 87,000,000원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역시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행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위 범죄조직은 2022. 3. 2. 최초로 피고에게 접근하여 피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 하여금 다른 피해자들인 제3자들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도록 종용하였다.

② 원고가 2022. 3. 22. 이 사건 예금계좌에 이체한 45,000,000원은 2022. 3. 22.부터 2022. 3. 23.까지 이틀 사이에 피고의 다른 예금계좌에 이체된 후 출금되거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곧바로 출금되었다. 피고는 이와 같이 인출된 현금 45,000,000원을 범죄조직이 지시하는 그대로 모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22. 3. 23.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이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2022. 3. 23. 이 사건 예금계좌에 이체한 42,000,000원은 계좌동결로 그 처분이 정지되었다가, 주식회사 D의 피해환급금 결정에 따라 위 42,000,000원을 재원(財源)으로

2022. 6. 28. 원고에게 25,140,000원이, 또 다른 피해자에게 16,760,000원이 각 지급되었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역시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행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1 내지 5호증)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위 범죄조직에 '고의'로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피고는 2022. 3. 3.부터 2022. 3. 23.까지 수회에 걸쳐 인출된 현금을 노상에서 접선한 범죄조직에 직접 전달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기 시작한 2022. 3. 22. 이전에 피고 자신이 금융사기 피해자라거나 금융사기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과실'로 이 사건 예금계좌를 금융사기 범죄행위에 이용되게 하고 직접 금전 수거행위에까지 연루되었는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역시 조직적인 금융사기 범죄행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한 수법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거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원고의 당초 전체 손해액은 87,000,000원이므로, 과실상계 혹은 책임제한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 한도는 60,900,000원(= 87,000,000원 × 70%)이다. 위

60,900,000원에서 피해환급금 25,140,000원과 원고가 스스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는 관련

소송의 청구금액 4,000,000원을 공제하면 31,760,000원(= 60,900,000원 - 25,140,000원 - 4,000,000원)이 남는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금 31,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과실로 금융사기에 가담한 마지막 날인 2022.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성준